

**[사 건 명] 행심 2016-19**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부 부장으로, 2016. 3. 14. 청구의 ▽▽▽으로부터 청구의 ●●●가 ☆☆부 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의 ●●●를 찾아가 물어보았으나 청구의 ●●●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의 ◇◇◇에게 청구의 ●●●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다. 청구의 ●●●는 2016. 3. 15. 청구인을 찾아와 이름만 묻고 가려하였고, 청구인은 대화를 요청하며 청구의 ●●●의 팔을 잡았는데, 지나가던 청구의 □□□ 교사가 상황을 목격하여 청구인은 □□□ 교사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 라. 청구인은 같은 날 석식시간이 시작되기 전 청구의 ●●●를 직접 찾아가 화해를 하고 돌아왔다.
- 마. 청구의 ▽▽▽과 △△△는 청구인이 □□□ 교사와 이야기하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청구인이 대답해 주었는데, 청구의 ▽▽▽과 △△△는 석식시간 퇴식구에서 ●●●를 만나서 ☆☆부를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 바. 청구인은 석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청구의 ▽▽▽과 △△△가 ●●●에게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를 찾아갔으나 ●●●가 반에 없어서 ●●●의 친구에게 오해를 심어준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 사. 청구인이 전화하였으나 ●●●는 학원을 가야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청구인은 ●●●에게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문자를 남겨놓았다.
- 아. 청구의 ●●●는 2016. 3. 16. 부장교사를 찾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6. 3. 31.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자. 청구의 ●●●의 모가 2016. 4. 1. 학교폭력신고를 하였고, 2016. 4.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다.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차. 청구인은 2016. 4.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 5.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행위는 전과가능성이 없어서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팔을 잡은 행위 또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지속성, 고의성이 없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관련 학생에게만 화해 중개행위를 하였고, 공연히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을 전파시켜 학폭위 심의 전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반성과 화해의 의사를 표명해 왔으므로, 서면사과는 부당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가 ☆☆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친구들에게 ●●●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들이 ●●●를 찾아가 재차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로서는 무서움을 느껴 선생님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는 바, 청구인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사건이 진행중인 사실이나 특정대상자를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학폭위 심의 전에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을 전파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화해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가장 경미한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부에 부장으로서 직접 ●●●에게 ☆☆부 욕을 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자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후 친구들에게 ●●●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2.14. 선고 2007도 8155판결 등)

- 3) 청구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 △△△가 ●●●에게 ☆☆부 욕을 하였는지 재차 질문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학생들에게 ●●●에 대한 의욕을 해소시켜주는 정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 △△△는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가 힘들어했던 부분은 청구인이 ●●●에게 직접 물어본 행위나 청구인이 ●●●의 팔을 잡은 행위보다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에 대한 나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데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건처리에 절차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1) 피청구인은 4월 4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야간자율학습에 청구인이 빠진다고 하여 다음 날 약속을 잡았으나 청구인이 조퇴를 하여 면담을 할 수 없었다. 가사 청구인은 약속을 잡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

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담당교사와 약속을 잡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폭위를 개최하는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절차상의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 2) 피청구인은 강당에서의 학생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무근인 소문으로 1학년 학생이 힘들어하니 2학년들과 1학년들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인 『서면사과』의 처분이 제일 경한 처분이므로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서면사과』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재결한다.

[소수의견]

청구인은 ☆☆☆ 부장으로서 ●●●가 ☆☆☆ 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선배의 질문만으로도 후배가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를 후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2016. 3. 15. 친구들에게 ●●●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 주고 나서 직접 ●●●에게 찾아가 화해를 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도 ●●●가 ☆☆☆ 욕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청구인과 ●●●가 화해한 이후에, 청구인의 친구들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질문을 하였고, ●●●는 청구인의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구인과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의 친구들이 ●●●에게 질문을 해 오자 ●●●가 이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 느낀 심리적 부담감은 청구인 자체의 행위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친구들이 다시 ●●●를 찾아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친구들이 ●●●에게 재차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에게 2차 사과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귀가한 이후여서, ●●●의 친구에게 ●●●에게 사과할 계획임을 전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에게 연락하였다. 그런데 ●●●는 청구인의 전화가 무서워 전화대답도 형식적으로 했고 이후 청구인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에게 ●●●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학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청구인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친구들이 재차 질문한 행위때문인 바,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